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6권
2010년 5월 pp.105~130

논문접수일 2010.04.30
논문심사일 2010.05.13
심사완료일 2010.05.23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하 강 현*

-
- I . 서 언
 - II .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의의
 - III . 적절적용 사례분석
 - IV . 확대적용 사례분석
 - V . 결 언
-

주제어 : 대금지급장소, 매도인의 영업장소, 물품이나 서류의 교부, 이자율,
재판관할권, 국제대금지급규칙

I . 서 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은 대부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과 관련된다. 매수인의 주된 의무는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및 인도물품의 수령의무인데, 이 중 후자를 위반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소송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매수인의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khha@ysu.ac.kr, 010-3897-6649

대금지급의무와 관련된 분쟁은 주로 대금지급장소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물품매매법¹⁾에서는 제57조 1항에서 물품 또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상환장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를 대금지급장소로 규정한다고 비교적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양 당사자가 대금지급장소를 매매계약 또는 후속되는 통신 또는 행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장소가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이렇듯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간략하지만, 본 조항은 대금지급과 연계하여 파생되는 문제 가령, 지급통화의 결정 또는 이자율의 결정이나 초과지급된 대금의 상환장소 또는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장소 결정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관할권의 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CISG가 국제매매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법이 된 만큼²⁾, 우리나라의 국제상인(무역업체 및 무역실무자)도 본 법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규정을 무역실무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취지에 관하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사례에 관하여는 유형별로 분류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본 조항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고에서의 접근방식이나 내용이 불충분할 우려도 있으나, 유형별로 분석한 사례를 통하여 무역실무자들이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이라 약칭한다.

2)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가입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74개국이 체약하고 있으며, 이를 체약국 상인간에는 본 법이 직접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국가가 본 협약에 체약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체약 당사자국의 법을 적용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본 법에 적용된다(CISG 제1조 b호). 이를 CISG의 간접적용이라 하며, 간접적용되는 경우까지 고려해볼 때 본 법은 이제 국제적인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체약국으로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태리, 호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불가리아, 콜롬비아, 쿠바,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이라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키르기스스탄, 네덜란드, 몽골,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페루, 루마니아, 싱가풀, 스페인,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등이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20대 무역강국이 모두 본 협약에 체약하고 있다.

II.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의의

1. 규정취지

CISG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 제57조³⁾에서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b)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매도인의 영업소 변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매도인이 하여야함을 규정한 것으로⁴⁾, 이는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⁵⁾

판례를 분석하면, 제2항의 적용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제1항이 직접적용 또는 확대적용된 판례는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⁶⁾ 본 조에서 대금지급장소로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규정한 것은 CISG 제35조에서 매수인의 물품수령 권리로써 매수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상응하는 권

3) Article 57.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b)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s place. (2) The sell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4)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UNIDROIT 국제상사 계약원칙 2004, 이하 'PICC'라 칭함) 제6.1.6조 2항에서도 CISG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을 두고 있다.

5) CISG 제80조에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 규정은 매수인에게 손해(이자의 손해도 포함) 배상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Schwenzer, P.,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CISG II,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633.

6) 제III,IV편 참조.

리로써, 매도인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⁷⁾ 본 조 제1항 a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장소가 미합의된 경우에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대금지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지만⁸⁾, b호에서는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물품의 교부장소가 대금지급장소가 된다고 규정하여 a호의 예외를 b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령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즉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을 매수인의 국가에서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대금지급장소는 매수인 국가에서의 그 상환장소가 되는 것이다.⁹⁾ 이러한 b호의 규정은 a호의 규정(일반적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타 법과의 비교

PICC에서는 이행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결정될 수 없는 때에는,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¹⁰⁾ 또한 PECL 제7조에서도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채권자인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우리민법 및 독일민법에서도 CISG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민법에서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장소로서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때에는 변제장소의 일반원칙(지참채무의 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¹²⁾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목

7) Honno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360.

8)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대금지급장소로 규정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errari, F., Flechtnar, H., Brand, R.A., The Draft Uncitral Digest and Beyond, European Law Publisher, 2004, pp.427-428.

9) 그러한 영업장소는 그 영업장소의 내부(실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계정도 가능한 것이다. Enderlein, F., and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Publications, 1992, pp.217-218.

10) PICC 제6.1.6조 제1항.

11)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유럽계약법 원칙 PECL이라 칭함) Article 7 : 101(1)(a) : Hondius, E., Heutger, V., Jeloschek, C., Sivesand, H., Wiewiorowska, A., Principles of European Law Sa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234.

적물의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¹³⁾, 독일민법(제270조 1항)에서도 채무자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 금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물품의 수령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¹⁴⁾하고 있어, CISG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⁵⁾

3. 무역관련 타 규칙과의 관계

국제물품매매에서 양 당사자는 대금지급방식으로 신용장 또는 추심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상 요구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데, 이는 본조 제1항 b호에서 규정한 물품 또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장소에 해당된다. 설혹 서류조건없이 대금 지급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라 할지라도¹⁶⁾, 그 신용장상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금지급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신용장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 대금지급 행위가 규율되게 된다.¹⁷⁾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 대금지급행위가 규율되면, 이 경우에는 CISG보다 동 규칙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다.¹⁸⁾

추심거래의 경우에도 상업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기 마련이지만, 설혹 무담보추심(clean collection)이라 할지라도 대금지급장소는 정하여 지게 마련이다. 추심거래의 경우에는 추심통일규칙¹⁹⁾에 의해 규율된다. Incoterms에

12) 한국민법 제467조 2항.

13) 한국민법 제586조.

14) Uniform Commercial Code 제2-310조 a호.

15) Gabriel H. D.,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Oceana Publications Inc., 2004, p.172.

16) Clean Credit라 할지라도, 동 신용장상에는 대금지급은행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17) 거의 모든 신용장상에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600에 의해 동 거래가 규율됨을 명시하고 있다.

18) CISG 제9조에서는 양 당사자간에 동의한 관행 및 확립된 관습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도 목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URC)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가 CISG보다

서는 대금지급 장소 또는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매매계약체결후 후속하는 통신이나 행위 가령, 선적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한 송장 또는 다른 통신문에서 대금지급장소(자신의 입금계정)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매수인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장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²⁰⁾ 요약하면 신용장 또는 추심거래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후속적인 서류 및 행위도 대금지급장소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4. 본 조항의 확대적용

본 조는 대금지급장소를 결정하는 조항이지만, 법정에서는 종종 재판관할 문제나 지급통화 또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본 조항의 규정 또는 그 취지를 준용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CISG는 단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제4조)하므로, 재판관할이나 이자율 등에 까지 확대적용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본 조항이 대금지급과 관계된 재판관할권의 결정에 확대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판관할은 유럽의 1968년 브뤼셀협약²¹⁾이나 1988년 루가노협약²²⁾ 등에 의해 규율되는데, 브뤼셀협약에서는 분쟁중인 의무의 이행장소를 기초로 재판관할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루가노협약에서도 관련의무의 이행지의 법정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즉 대금지급문제와 관련된

우선 적용된다.

- 20) CISG 제8조 3항에서는 후속되는 모든 행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속되는 통신이나 행위도 효력을 지니게 된다. 물론 매수인의 반대통신이 있었다면 그 또한 효력을 지닌다. 오원석, 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p.194 참조.
- 21) 민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브뤼셀 협약 1968(1968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이하 ‘브뤼셀협약’이라 칭한다.
- 22) 민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dome at Lugano 1988) ; 이하 ‘루가노협약’이라 칭한다.
- 23) 브뤼셀협약 제5조 1항.

소송에서는 대금지급장소에서 재판관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데에도 본 조항이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판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CISG체약국이거나, 아니면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거 CISG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이러한 확대적용의 원리는 당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지급통화의 결정에도 적용되며, 이는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ISG에서는 연체지급액이나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이자가 지급되어져야 하는 장소에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원이나 중재법정의 일반적인 결정원리이므로,²⁵⁾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본 조항이 확대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초과지급분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장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금액의 지급장소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지급되도록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가 형성된 것은 CISG 제57조에서 매도인의 영업장소로 규정한 원리가 바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초과지급분 또는 손해배상액 지급장소의 결정에도 본 조항이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²⁶⁾

III. 직접적용 사례분석

1. 대금지급장소가 매도인국으로 결정된 사례

(1) 매수인이 가족용 구매라고 주장한 경우

① 사건개요²⁷⁾

피고인 독일의 매수인은 통나무집을 가족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집을

24) 루가노협약 제5조 1항.

25) Goode R.,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303.

26) Schlechtriem P., Schwenzer I.,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I*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632-633. Honnold J.O., op.cit., p.360, p.332.

27) Finland: Korkein oikeus(Finnish Supreme Court), KKO 2005:114, 14 October 2005 : A/CN.9/SER.C/ABSTRACTS/83, 23 February 2009, Case 843.

독일내에서 매도인의 판매대리점으로 사용하고자, 원고인 핀란드의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마지막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핀란드 법원에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통나무집의 용도가 가족용이므로 CISG 제2조 1항에 의거 CISG가 적용배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²⁸⁾ 핀란드 최고법원은 그 집은 가족용이면서도 동시에 매도인의 판매대리점이라는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되므로, 본 건은 CISG에 적용되며 또한 CISG 제57조 1항에 의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소(핀란드)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② 판결의의

CISG에서는 비상업적인 용도 즉 개인용, 가사용 또는 가족용으로 매매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시키지만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CISG가 적용된다. 또한 CISG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대금지급장소가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되는 것이다.

(2) 대금지급을 수표로 하는 경우

① 사건개요²⁹⁾

피고인 브라질의 매수인은 원고인 독일의 매도인으로부터 카페트를 수차례 분할인도 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매수인은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매도인과 대금지급에 관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급방식은 매월 수표에 의한 지급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일부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금이 남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매매계약과 새로운 협정서상에는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독일 항소법원은 본 사건은 CISG 제1조 1항 b호에 의거³⁰⁾ 국제사법의 원

28) CISG 제2조에서는 본 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매매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조 제1항 a호에서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용, 가사용 또는 가족용으로 매매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9) Germany: Oberlandesgericht Karlsruhe, 7 U 40/02, 10 December 2003 : A/CN.9/SER.C/ABSTRACTS/57, 11 July 2006, Case 635.

칙에 따라 독일법이 적용되고, 독일이 CISG체약국이므로 CISG가 적용됨을 판결하였다. 또한 CISG 제57조 1항에 의거 대금지급장소도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독일이라고 판결하였다. 대금지급방식에 관해서도 독일항소법원은 CISG 제29조에 의거³¹⁾ 그 방식과 조건을 자유로이 합의 할 수는 있지만, 대금의 지급장소는 매도인국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수표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독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판결의의

국제매매당사자가 대금지급방식을 합의 또는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CISG 제57조의 규정에 구속된다. 물품대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은행은 매도인국(독일)내에 있는 은행이어야 하며, 매수인국(브라질)내의 은행이 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에서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상환장소가 매수인국이라면 브라질 은행에서 결제되는 수표로도 지급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환장소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독일은행에서 결제하는 수표로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3) 매도인이 송장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① 사건개요³²⁾

원고인 이태리의 매도인은 피고인 독일의 매수인과 가죽피혁제품을 몇 차례 연속적으로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독일법원에 대금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물품대금중 일부는 분할지급하였고, 2회분은 매도인으로부터 송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론을 제기하

30) CISG 제1조 1항 b호에서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CISG가 적용(간접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31) CISG 제29조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7 U 2070/97, 9 July 1997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73.

였다. 본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이태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며, 그 장소에서 대금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매도인의 송장 미발급분에 대해서도 독일법원은 대금지급 기일로 결정될 수 있는 일자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의 송장 미발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즉 매도인의 송장 미발급이 매수인의 대금부지급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판결의의

매도인이 송장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수인의 대금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CISG에서는 매도인의 송장발급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매수인은 대금지급기일로 결정되는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³³⁾ 또한 독일법원은 대금지급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당해 의무이행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4) 매도인이 물품을 우송한 경우

① 사건개요³⁴⁾

독일에 있는 오스트리아 매수인은 중고급 친칠라모피를 독일의 매도인에게 주문하여 물품을 우송(by post)받은 후, 이태리에 있는 모피딜러에게 판매하였으나, 이태리의 딜러는 249개 모피 중 13개를 품질불량을 이유로 반송하였다. 이에 오스트리아 매수인은 그 반송물품리스트를 독일의 매도인에게 송부한 후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독일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스트리아법원에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 오스트리아최고법원은 대금지급 장소와 관련, 물품은 우송되었고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매도인을 대리하여 대금을 수령할 제3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장소는 매도인국인 독일이라고 판결하였다.

33) CISG 제59조 참조.

34) Austria: Supreme Court; 2 Ob 547/93, 10 November 1994 : A/CN.9/SER.C/ABSTRACTS/8, 21 December 1995, Case 106.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 매도인으로부터 모피를 우송 받아 이태리의 딜러에게 동일가격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독일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주문서만 매도인에게 송부하였을뿐 대리인계약이 없으므로 이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대금지급장소의 결정과 관련, 비록 물품이 우송되었더라도 독일내의 수령이 아닌 경우, 즉 오스트리아까지 매도인의 운송책임이 부과된 약정이 있는 경우였다면, 대금지급장소는 매수인국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³⁵⁾. 또한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국내에 매도인을 대리하여 대금을 수령할 제3자가 지정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도 대금지급장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3자의 지정이 있는 경우라면, 대금지급장소는 매수인국이 되는 것이다.

2. 대금지급장소가 매수인국으로 결정된 사례

(1) 매수인국이 서류교환장소인 경우

① 사건개요³⁶⁾

미국의 매수인은 영국의 매도인과 선철(pig iron)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물품에 대한 권리증서를 수령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영국의 매도인은 러시아의 제조업체로부터 선철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운반한 후 창고에서 보관중이었지만,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때 매수인은 파산법원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매수인은 창고에 보관중인 선철이 파산재산의 일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오하이오주 파산법원은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권리를

35) 물품매매에서 운송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의 물품수령장소가 매수인국내로 규정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과 대금의 상환장소를 매수인국으로 보아야 한다.

36) United States: U. S. [Federal] Bankruptcy Court, Northern District of Ohio, No. 00-18961 and Adversary No. 01-1045, In re Victoria Alloys, Inc. (Victoria Alloys, Inc. v. Fortis Bank SA/NV), 10 April 2001 : A/CN.9/SER.C/ABSTRACTS/57, 11 July 2006, Case 632.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② 판결의의

CISG 제57조 1항 b호 규정에 의하여, 본 사건에서의 대금장소는 서류와 대금의 상환장소인 매수인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계약에서 서류 또는 물품과 대금의 상환장소가 정해지면, 즉 b호가 적용된다면 a호(매도인의 영업장소)보다 b호가 우선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대금지급장소를 약정하였다면, 그 장소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매도인이 거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① 사건개요³⁷⁾

독일의 매도인인 원고는 독점판매협정하에 네덜란드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위생제품을 인도하여 왔다. 본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일반적 관례(general practice)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구입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장소가 매수인국이라며 독일의 재판관할을 반대하였다. 독일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대금지급장소는 매수인국이라고 판결하였다. 독일법원은 대금지급장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합의가 없더라도 양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판결의의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자신들이 동의한 관행과 자신들 사이에서 확립된 관습에 구속된다.³⁸⁾ 이러한 관습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에, CISG 제57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거래비용³⁹⁾을 매도인이 부담하여 왔으므로, 대

37) Germany: Landgericht Bielefeld; 11 O 61/98, 24 November 1988 : A/CN.9/SER. C/ABSTRACTS/33, 19 December 2000, Case 363.

38) CISG 제9조에서는 당사자 자신들이 동의한 관행 및 자신들 사이에서 확립된 관습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금지급장소를 매수인국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즉 대금지급장소는 양 당사자간에 계약상 합의된 장소 → 양 당사자간의 동의한 관행 또는 확립된 관습 → 제57조의 규정(매도인의 영업장소)순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IV. 확대적용 사례분석

1. 지급통화 및 이자율 결정에 적용된 사례

(1) 지급통화결정에 적용된 사례

① 사건개요⁴⁰⁾

원고인 프랑스의 매도인과 피고인 독일의 매수인은 독일에서 매도인의 컴퓨터 및 컴퓨터 침을 장기 독점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장기판매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여 미불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독일법원에 미불금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리도중 매수인은 독일의 마르크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CISG상의 물품이 아니라며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프랑스 매도인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매수인은 마르크가 아닌 매도인국의 통화인 프랑스 프랑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CISG 제57조 1항 a호에 의거 대금지급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이므로, 대금지급은 매도인국의 통화로써 이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미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CISG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며⁴¹⁾,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CISG 제61조 1항 b호에 의거⁴²⁾ 손해배상을

39) 거래비용에는 물품의 운송비용이 포함된다.

40) Germany: Oberlandesgericht Koblenz; 2 U 1230/91, 17 September 1993 : A/CN.9/SER. 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1.

41) CISG 제53조에서는 매수인의 의무를 총괄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및 인도된 물품의 수령의무를 매수인의 주된 의무로 보고 있다.

42) CISG 제61조 1항 b호에서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구제권을 정하고 있다.

청구한 건인 만큼, 그 지급통화는 매도인국의 통화가 합당하다고 추가 판시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CISG상의 물품의 범주내에 있다고 판결하였다.⁴³⁾

② 판결의의

CISG상에는 대금지급이나 손해배상액 지급에 있어, 그 지급 통화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본 사건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장소는 그 지급통화를 결정하는 데에도 유추하여 확대적용되기도 한다. 이태리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도⁴⁴⁾ 심리도중에 지급통화가 독일의 마르크인지 이태리의 리라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었는데, 동 사건 판결에서도 독일법원은 미합의된 지급통화는 대금의 지급장소인 매도인국의 통화(이태리리라)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⁴⁵⁾ 이와 같이 비록 CISG에서는 지급통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각국 법원에서의 판례는 CISG 제57조를 확대적용하여 대금지급장소와 지급통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2) 이자율결정에 적용된 사례

① 사건개요⁴⁶⁾

신청인인 오스트리아의 매도인과 피신청인인 유고슬라비아의 매수인은 호텔 건축용 자재의 매매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동 자재를

43)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그 자체를 매매하는 경우라면 CISG상의 물품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내장한 칩이나 디스크 등은 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44) Germany: Kammergericht Berlin; 2 U 7418/92, 24 January 1994 : A/CN.9/SER.C/ABSTRACTS/6, 7 April 1995, Case 80.

45) 앞서 살펴본 오스트리아 매수인과 독일 매도인간의 친칠라모피 대금지급 소송에서도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대금지급은 독일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대금은 독일의 마르크화로 지급해야함을 판결한 바 있다. Austria: Supreme Court; 2 Ob 547/93, 10 November 1994 : A/CN.9/SER.C/ABSTRACTS/8, 21 December 1995, Case 106.

46)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rbitral award issued in 1992 in case no. 7153 : A/CN.9/SER.C/ABSTRACTS/2, 4 November 1993, Case 26.

인도한 후 설치작업을 하였으나,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체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국제중재법정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심문도중 매수인은 본 건은 노무계약이므로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나, 중재법정은 본 건에서 노무계약은 매매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CISG에 의거 중재판정을 내렸다.⁴⁷⁾ 중재법정은 본 사건에서 계약내용에는 대금지급 장소 및 이자율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알고, CISG 제57조에 의거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오스트리아를 대금지급장소로 또한 이자율은 대금지급장소국인 오스트리아의 이자율에 의거 대금 및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중재판정을 내렸다.

② 판결의의

CISG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율을 결정하는데에도 CISG 제57조상의 대금지급장소의 결정기준이 유추적용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지급통화결정의 사례⁴⁸⁾에서도 독일법원은 대금지급을 거체한 독일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율은 매도인국인 독일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비록 CISG가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CISG 제57조가 적용되어 대금지급장소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통화뿐 아니라, 그 이자율도 동 대금 및 손해배상액 지급장소국의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대금지급장소의 결정은 지급통화 및 이자율 결정에도 동일한 개념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2. 재판관할권 결정에 적용된 사례

(1) 매수인이 대금지급 및 물품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

47) CISG 제3조 2항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중 압도적인 부분이 노동력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자재의 공급이 계약의 압도적인 부분이며, 설치를 위한 노무제공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아 CISG를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사건이다.

48) 위의 사례 Case 281.

① 사건개요⁴⁹⁾

원고인 이태리의 매도인은 나이지리아 교도소용 특수조리장비를 피고인 나이지리아의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후 매수인은 물품대금의 지급연기 및 분할인도 등을 요구하면서도, 인도된 물품의 수령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송장금액의 지급을 몇 차례 요구한 후 매수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공탁금(deposit)을 환수조치함과 동시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이태리법원에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⁵⁰⁾ 매수인은 이태리법원의 재판관할에 반대하였으나, 이태리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대금지급장소가 CISG 제57조에 의거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이태리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브뤼셀협약에 따라 의무이행장소의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게 되며, 로마협약 제4조에 따르더라도 당해 의무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되므로, CISG 제57조에 의거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의무이행장소이기 때문에, 이태리 법원이 재판관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CISG 제53조에 규정된 매수인의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의무 및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보증금 입금조치 및 계약해제선언과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사건에서는 CISG 제57조 제1항 a호에 의거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대금지급장소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브뤼셀협약에 따라 매도인국인 이태리가 재판관할을 하게 된 것이다.

49) Italy: Modena District Court – Carpi Division, Cucine SpA v. Rosula Nigeria Ltd, 9 December 2005, N0.138 : A/CN.9/SER.C/ABSTRACTS/82, 21 January 2009, Case 842.

50) 본 사건에서 매도인은 CISG 제63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기간을 매수인에게 설정, 통지한 후 CISG 제64조 1항 b호에 의거 정당하게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였으며, 손해배상도 CISG 제61조 1항 b호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2) 딜러협정하에 물품을 매매한 경우

① 사건개요⁵¹⁾

원고인 독일의 매도인과 피고인 프랑스의 매수인은 매수인이 프랑스에서 매도인의 피트니스장비 판매를 위한 지정된 딜러로서 행동한다는 딜러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수인은 몇 차례 피트니스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독일법원에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매수인은 독일법원의 재판권을 거부하였다. 독일의 항소법원은 브뤼셀협약 제5조 1항에 의거, 재판관할권은 계약의 이행장소에 기초함을 이유로 독일법원의 재판권을 확인하였다. 독일 항소법원은 본 딜러협정상에는 대금지급장소 또는 물품이나 서류의 상환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없음을 알게 되어,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독일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독일법원은 딜러협정서상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이에 따르는 어떠한 후속적 계약이 없었으므로,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인으로 행동하였을지라도 CISG 제3조 2항에 따른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교부장소는 CISG 제31조 b호에 의거 매도인의 제조공장이 된다고 추가 판시하였다.⁵²⁾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은 매도인의 중개인(딜러)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딜러협정서상에는 물품의 매매만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본 사건은 CISG에 적용되는 것이다. 계약내용은 계약서상의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그 합의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물품매매계약에서 세부적인 후속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CISG가 직접 또는 간접적용 되기 마련이다.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장소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장소

51)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7 U 2246/97, 9 July 1997 : A/CN.9/SER. 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7.

52) CISG 제31조에서는 물품인도장소와 관련하여, a호에서는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호에서는 a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특정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재판관할도 하게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독점대리점계약하에 매매된 경우

① 사건개요⁵³⁾

독일의 포크리프트 제조업자인 원고는 피고인 프랑스의 매수인과 매수인이 프랑스내에서 제조업자의 포크리프트를 독점 판매하는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독점판매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독일법원에 제기하게 되자, 피고는 독일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인하였다. 독일의 항소법원은 브뤼셀협약 제5조 1항에 의거, 재판관할권은 계약의 이행장소에 기초하여 제조업자의 영업장소가 그 이행장소라고 보았다. 또한 CISG 제31조 b호에 의거 제조업자의 제조공장이 물품의 교부장소이며, 동 제57조 1항에 의거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독일이므로, 독일법원이 재판관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비록 분쟁은 독점대리점권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쟁점이었지만, 재판관할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CISG가 적용된 것이다. 독일의 항소법원은 제조업자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었는지를 심리한 결과, 그러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계약의 이행장소로 보아, 독일의 재판관할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② 판결의의

일반적으로 CISG는 ‘독점유통계약’ 또는 ‘독점대리점계약’ 혹은 앞서 살펴본 ‘딜러협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본 사건 및 앞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SG는 독점유통계약 또는 독점 대리점계약 등의 종개인 또는 대리인의 권리 그 자체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한 계약내의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문제에는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재판관할조항이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① 사건개요⁵⁴⁾

53)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23 U 3750/95, 22 September 1995 : A/CN.9/SER. 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6.

프랑스의 매도인인 원고는 영국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재단사용 옷걸이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매도인은 파리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한 송장의 이면에는 일반협정내용이 인쇄되어 있었고, 거기에 재판관할권은 파리법정에 있다고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매수인은 송장 이면에 인쇄된 재판관할조항은 효력이 없다며, 런던고등법원이 재판관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항소하였다. 이에 파리항소법원은 매수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리상업법원은 재판관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파리항소법원은 CISG 제57조를 적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은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파리가 재판관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다.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파리항소법원은 CISG 제57조에 의거 매도인의 영업장소인 파리가 재판관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면 매도인이 발송한 송장이면 인쇄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송장 또는 주문서의 이면에 인쇄된 조항도 명시적 조건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에서의 판례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⁵⁵⁾ 본 사건에서도 파리항소법원은 CISG 제57조를 근거로 재판관할권을 결정한 것이다.

(5) 지급보증은행이 있는 경우

① 사건개요⁵⁶⁾

원고인 프랑스의 매도인은 피고인 벨기에의 매수인과 금속판 판매계약을 체

54) France: Court of Appeal of Paris, 15 Octobher 1997, SARL Sodime-La Rosa v. Softlife Design Ltd. et al. : A/CN.9/SER.C/ABSTRACTS/17, 11 May 1998, Case 223.

55) 사실, 송장 또는 주문서 이면에 인쇄된 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명시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좋고, “국제물품매매에서 승낙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3권(2009.8), pp.43-44 참조.

56) France: Court of Appeal of Paris (1st Division, Urgent Proceedings Section), 10 November 1993 : A/CN.9/SER.C/ABSTRACTS/11, 2 December 1996, Case 156.

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게 되자 매수인과 벨기에의 지급보증은행을 상대로 프랑스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계약에는 벨기에 은행의 지급보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사건에서 프랑스상업법원은 프랑스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으며, 벨기에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프랑스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CISG 제57조에 의거 대금지급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이므로, 프랑스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1심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하였다.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은행이 매수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금지급장소는 매수인의 영업장소로 보기 쉬우나, 지급보증은행의 소재지와 대금지급장소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지급보증은행이 보증서를 발행할 때 지급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6)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① 사건개요⁵⁷⁾

원고인 독일의 매수인은 피고인 미국의 매도인(제조는 러시아공장)으로부터 칼절단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던 도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상해배상 및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매수인은 독일법원의 재판관할에 반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독일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 독일의 항소법원은 CISG 제57조 1항 a호에서 규정한 매도인 영업장소가 대금지급장소라는 규정의 일반원칙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장소가 대금지급장소라는 것이며, 본 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그 이행장소는 청구권이 있는 독일이므로, 청구권자의 영업장소인 독일이 재판관할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57) Germany: Landgericht Aachen; 43 O 136/92, 14 May 1993 : A/CN.9/SER.C/ABSTRACTS/1 17 May 1993, Case 47. Germany: Oberlandesgericht Dusseldorf; 17 U 73/93, 2 July 1993 : A/CN.9/SER.C/ABSTRACTS/1 17 May 1993, Case 49.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독일의 항소법원은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CISG상의 대금지급장소 규정을 준용하여 판결한 것이다. 이와 같이 CISG상의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장소 및 그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데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7) 매도인이 거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① 사건개요⁵⁸⁾

앞서 살펴본 독일 매도인과 네덜란드 매수인간의 위생제품매매에서도 재판관할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독일의 매도인은 독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독일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국까지의 거래비용을 관행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므로 대금지급장소는 매수인국이며, 따라서 재판관할권도 매수인국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②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SG 제9조상의 양 당사자간의 확립된 관행은 CISG 제57조상의 대금지급장소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대금지급장소의 결정은 재판관할권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IV. 결 언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가 그 장소가 된다. 이러한 장소의 결정에는 매매계약 및 이에 후속되는 양 당사자간의 통신이나 행위도 고려된다. 만일 양 당사자가 물품을 지배하는 서류 또는 물품의 교부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상환장소가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신용장 또는 추심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된 조건에 따라 대금지급장소가 결정된다. 이 때에는 UCP 또는 URC가 그 규

58) 앞의 Case 363.

칙으로 인정되며, 이는 CISG보다 우선 적용된다. 만일 이러한 상환장소 또는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소재한 곳이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이러한 장소가 반드시 매도인의 영업소 내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매도인의 은행계정으로도 충분하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대금지급장소는 대금지급 문제와 연계된 다른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도 확대적용된다. 가령 지급통화 또는 이자율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금지급지국의 지급통화 및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결정되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대금지급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역시 대금지급장소의 법원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브뤼셀협약 또는 루가노협약에 서 당해 행위의 이행장소지에서 재판관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금지급지의 결정은 재판관할지역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초과지급금의 지급장소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장소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장소를 대금지급장소로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즉 채권이 있는 곳에서 지급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바로 초과지급금의 지급장소를 매수인의 영업소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장소를 피해당사자의 영업소로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국제매매에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계약당사자는 대금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체결시에 아니면, 후속되는 서류나 통신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오원석, 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승낙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3권 2009.8.
- Enderlein, F., and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Publications, 1992.
- Ferrari, F., Flechtner, H., Brand, R.A., The Draft Uncitral Digest and Beyond, European Law Publisher, 2004.
- Gabriel H. D.,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Oceana Publications Inc., 2004.
- Goode R.,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Hondius, E., Heutger, V., Jeloschek, C., Sivesand, H., Wiewiorowska, A., Principles of European Law Sa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onno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Schlechtriem P., Schwenzer I.,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I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chwenzer, P.,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CISG II,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Uniform Commercial Code.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600.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 1968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dome at Lugano 1988.

- Austria: Supreme Court; 2 Ob 547/93, 10 November 1994 : A/CN.9/SER.C/ABSTRACTS/8, 21 December 1995, Case 106.
- Finland: Korkein oikeus(Finnish Supreme Court), KKO 2005:114, 14 October 2005 : A/CN.9/SER.C/ABSTRACTS/83, 23 February 2009, Case 843.
- France: Court of Appeal of Paris, 15 Octobher 1997, SARL Sodime-La Rosa v. Softlife Design Ltd. et al. : A/CN.9/SER.C/ABSTRACTS/17, 11 May 1998, Case 223.
- France: Court of Appeal of Paris (1st Division, Urgent Proceedings Section), 10 November 1993 : A/CN.9/SER.C/ABSTRACTS/11, 2 December 1996, Case 156.
- Germany: Oberlandesgericht Karlsruhe, 7 U 40/02, 10 December 2003 : A/CN.9/SER.C/ABSTRACTS/57, 11 July 2006, Case 635.
-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7 U 2070/97, 9 July 1997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73.
- Germany: Landgericht Bielefeld; 11 O 61/98, 24 November 1988 : A/CN.9/SER.C/ABSTRACTS/33, 19 December 2000, Case 363.
- Germany: Oberlandesgericht Koblenz; 2 U 1230/91, 17 September 1993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1.
- Germany: Kammergericht Berlin; 2 U 7418/92, 24 January 1994 : A/CN.9/SER.C/ABSTRACTS/6, 7 April 1995, Case 80.
-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7 U 2246/97, 9 July 1997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7.
-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23 U 3750/95, 22 September 1995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6.
- Germany: Landgericht Aachen; 43 O 136/92, 14 May 1993 : A/CN.9/SER.C/ABSTRACTS/1 17 May 1993, Case 47.
- Germany: Oberlandesgericht Duseldorf; 17 U 73/93, 2 July 1993 : A/CN.9/SER.C/ABSTRACTS/1 17 May 1993, Case 49.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rbitral award issued in 1992 in case no. 7153 : A/CN.9/SER.C/

ABSTRACTS/2, 4 November 1993, Case 26.

Italy: Modena District Court – Carpi Division, Cucine SpA v. Rosula Nigeria Ltd, 9 December 2005, N0.138 : A/CN.9/SER.C/ABSTRACTS/82, 21 January 2009, Case 842.

United States: U. S. [Federal] Bankruptcy Court, Northern District of Ohio, No. 00-18961 and Adversary No. 01-1045, In re Victoria Alloys, Inc. (Victoria Alloys, Inc. v. Fortis Bank SA/NV), 10 April 2001 : A/CN.9/SER.C/ABSTRACTS/57, 11 July 2006, Case 632.

ABSTRACT

A Study on the Cases of Place of Payment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a, Kang Hun

CISG provides the place of payment at the Article 57 which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b)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s place.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the place where this is to happen according to the contract or CISG is the place of payment. When the parties have not agreed to this, the place of payment is the seller's place of payment. The buyer does not send the money to seller's office, but pays it to the seller's bank account.

Where payment is effected by a L/C, such operations shall be governed by UCP and collection of money governed by URC. The payment at the seller's place of payment affects the rate of interest, currency of money and jurisdiction which is interpreted by Brussel convention and Lugano convention.

The principle on which the CISG is based, characterizes the obligation of payment as an obligation to be performed at the creditor's place of business.

This principle affects the place of damage claims payable to be at the creditor's that place. Payment at the place of business is required, but not inside the place itself.

Key Words : The place of payment, Seller's place of business, Handing over of goods or documents, UCP/URC, The rate of interest, Jurisdiction, Brussel convention, Creditor's place